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 인 재
전북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그간 중앙집권적 산업화모델에 의해 자본, 노동,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양적 성장을 유도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과집중화, 지방의 낙후를 초래한 국토의 불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제조업체, 금융기관의 50-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로 지방은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서비스업의 부진 등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에 따라 중국의 부상 등으로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전통산업이 부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 지방에 사람과 기업이 입주하기 좋도록 각종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지역민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지역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인상, 분권교부세의 도입, 부동산교부세 신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00년 8조 3천억원에서 2006년 약 20조원

규모로 증대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하면 그 규모가 4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증대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의 지방재정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중앙부처간 재원배분방식과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관리방식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능력과 사업관리능력의 제고가 강조되는 논거가 여기에 있다. 지방재정은 이제 예산낭비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균형발전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후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해 상론하고자 한다.

II. 균형발전사업의 개관

1. 균형발전의 개념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이 수도권에 비해 저하되고 있는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RDP 성장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하며, 1인당 소비는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크나 연구개발비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구가 비수도권에서 답보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주요 지역경제 지표 추이

구분	경제활동인구 (만명)		GRDP (불변,조원)		1인당소비 (명목,천원)		연구개발비 (조원)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000(A)	10,304	11,830	276.5	301.5	12,447	7,991	8.4	5.4
2006(B)	11,845	12,133	349.8	379.5	16,245	10,915	15.4	8.7
B/A(%)	15.0	2.6	26.5	25.9	30.5	36.6	83.3	61.1

주 : GRDP 및 1인당 소비는 2005년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소득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분배측면의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변수로 활용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준으로 신활력사업 대상 시 · 군으로 선정된 70개 시 · 군의 소득 비중을 보면, 2002년 현재 전국 소득세할 총액의 2.5%에 그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면적이 전 국토의 48.8%이고 인구가 7.4%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외국에 비해 불리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후 평가하여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고비용구조
  - 高地價로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상회하여 서울의 경우 파리의 9배, 암스테르담의 3배 이상 수준이다. 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 토지이용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
  - 고임금으로 제조업의 시간당 인건비가 경쟁국인 홍콩, 싱가폴에 비해 높다.

□ 인력부족 : 생산직, 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의 부족하다.
  -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 규제총량의 강화 : 규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 · 노동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규제신설로 규제철폐가 무색
  - 규제총량 2000년 7,133건에서 2006년 8,083건으로 13.3% 증가하고 있다.

□ 창업환경의 불리(절차, 기간, 비용, 최저 자본금)

□ 근로시간의 경직성, 해고 비용이 과다하다.

현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 지방이전 기업현황, 2000년부터 2006년까지 991개 기업이 이전하였는데, 100인 이상 기업 122개, 지방에 본사를 마련한 기업이 310개에 달하고 있다.

□ 첨단사업 및 벤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은 지방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정책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다극분산형 국토공간 창출과 낙후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정책은 〈표 2〉에 정리되어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상당수는 중복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업간에 상호 연계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표 2〉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부처별	주요 사업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 아름마을, 오지/도서개발 접경지역지원, 신활력사업, 살기좋은지역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산업자원부	지역진흥사업, 자유무역지역, 혁신클러스터, 벤처촉진지구(중기청)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아름다운우리마을 문화역사마을
농림수산부	농어촌체험마을, 농촌종합마을 전통테마마을(농진청)
재정경제부 등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소프트타운$_1$, 대덕연구개발특구$_2$

1) 중앙부처 수행사업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등이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이 있다. 이외에도 건설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청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인력개발, 마케팅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중소기업청은 자금지원, 기술혁신지원, 인력지원, 판로개척지원, 수출지원, 경영정보화지원에 총 23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청과 거의 유사한 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일차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기준에 합당한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에서 제외한(혹은 중복적으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중소기업청의 사업계획이 나온 후에야 자치단체의 기업지원사업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낙후지역개발사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부터 각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읍지역과 낙후지역 개발은 행정자치부, 면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은 농림부, 그 외 산촌지역은 산림청,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등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활력사업,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과 가시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내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 학습효과의 증진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혁신을 유도하여 특성화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신활력사업의 경우도 자문위원회의 컨설팅기능과 사업평가로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차별화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능력에 적합한 제도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이 얼마인가, 자치단체장들의 관련기관이나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업간 분산 · 중복을 완화할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부처로서 행정자치부의 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권력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과 통합기관으로 행정자치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두뇌집단(Think Tank)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 등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투자유치를 자치단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으로 기업유치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창업과 투자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투자유치 노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의 차별성(예 : 중소기업청의 각종 사업)이 크지 않으며, 관련조직의 확대와 백화점식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의 기업지원사업은 자원의 투입(input)만을 강조하여, 투입된 자원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지원서비스에 소요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및 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과결과에 따라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주민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등 소프트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부분 경제투자, 경제통상, 경제진흥실이나 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과(課) 단위의 기업지원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조직'(신규유치)과 '현재 운영 중' 인 자치단체 내 기업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운영지원조직)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기업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크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치단체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창구 역할 및 신기술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 여성창업자금, 중소유통구조시설개선사업, 소상인 육성자금, 구조조정(기업회생)자금, 대 · 중소기업 협력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셋째, 기술 · 정보지원으로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 · 정보 지원은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신산업(BT, IT) 집적지화촉진 지원사업,'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정보 지원사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술 · 정보 지원사업 또한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지원금액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수출지원서비스로 자치단체의 수출지원서비스 사업은 '해외판로개척지원,' '수출경쟁력확보지원,' '전자무역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지원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원 사업 개수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 서비스나 모범사례로 부각된 타자치단체의 사업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업에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소속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수출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청과 KOTRA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투자유치조직의 독립적인 성격과 민관합동에 의한 전문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지역경제발전계획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의 비즈니스적인 지향으로 성과협약을 맺어 엄격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III.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지방재정구조

전통적으로 지방재정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낭비의 방지라는 소극적 책임성에 치중하였으나 최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적극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재정은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중앙정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지역관련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유형

구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자치단체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재정의 발전은 지방분권체제가 아닌 중앙집권 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지역개발 사업들은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이전재정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역량을 스스로 축적하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단순 집행 중심의 재정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

중앙기능 및 재원의 지방이양은 참여정부 재정세제로드맵에 나타나 있듯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03년 8월부터 2월까지 관계부처 및 국가보조금 정비 작업반(TF)회의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존치할 사업 등 3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재원을 재배분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의 정비에 따른 재원이양은 2005년도 예산부터 적용되었는데, 정비된 사업은 161개 사업에 대한 3.6조원 규모는 새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및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부처과제로서 추진되었으며, 지방교부세제도는 2003년 및 2004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어 온 국고보조 지역사업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포괄보조금제도를 정책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큰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시행중인 사업과 희망 사업과의 불일치,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분할 및 소액화, 사업내용의 획일화와 주민 민원사업위주의 추진 등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눠 먹기식의 예산배정, 지역에서의 복잡한 입찰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과 관련이 적다는 것과 중앙에서 정해준 사업보다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중앙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지방교부세 포함)는 자체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의 보정계수에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수요 보강이 한 항목을 이루고 있다. 2006년 지역균형수요는 2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44%는 군급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전체 기준재정수요 37조 4천억원의 6.4%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낙후지역에 대한 반영률은 높지 않다. 현재의 낙후지역 보정은 법률에 명시된 도서 및 오지를 중심으로 보정되므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지표에 의해 보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균형수요를 반영하는 측정항목은 읍면동비, 지역개발비, 상수도비, 지역경제비, 도로개량비, 교통관리비 등 15개 항목에 산재되어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수요반영을 위해 이들의 상당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개발비의 지역균형수요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교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의 행정 · 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
- 주민복지 · 지역경제 · 지역개발 · 민원서비스 ·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노력에 의한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앞에서 설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와 관련 자치단체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운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기술 · 정보지원, 수출지원 등 각종 사업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전략을 택하고 있으나 막상 세출측면에서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산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후 평가하여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선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구상을 상향식으로 전개하여 결정권한을 지방에서 갖고 추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동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며, 자원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이 '입지'로서 지역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닐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수행되는 부처의 사업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일선기관의 통합이 본래 의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기책임성 하에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자치

단체의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전문성을 일시에 높인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 균형발전지원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각 부처사업의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정책제안이 이루어졌는데 부처뿐만 아니라 시 · 도간 통합조정기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간의 격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의 편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지역의 생산소득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는 광역시도별로만 편제되어 분배측면의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표시기도 너누 늦어(잠정치 익년 12월, 확정치 익익년 6월) 시의성 및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초적인 투자 및 서비스 관련지표가 미흡한 실정이다.

❖❖❖ 참고문헌 ❖❖❖

김현호 · 한표환(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노기성 · 박완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 – 지방교부세 지역균형수요를 중심으로」, KDI.

박노욱(2007),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박양호(2006), 「국가균형발전의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제141호)

임성일 · 이창균 · 서정섭(20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